



성적 괴롭힘과 주택

안내 자료

성적 괴롭힘이란?

캘리포니아 법은 보호 계층에 속한 이를 차별적인 주택 관행으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괴롭힘 금지는 보호 계층에 소속되어 있거나 보호 계층에 소속되어 있다고 인식되는 개인 또는 캘리포니아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장려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괴롭힘을 포괄합니다.

성적 괴롭힘에는 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대가성 성적 괴롭힘
2. 적대적 환경의 성적 괴롭힘

제가 집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경우, 저를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예. 공평 주거 권리 법은 집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성차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집이 프라이버시와 안도감, 안전감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대가성

대가성 괴롭힘은 주택 제공자가 개인에게 주택 또는 주택 관련 서비스를 획득 또는 유지하는 조건으로 성행위에 참여하라는 원치 않는 요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호 간에 이익이 되며 동의한 거래는 원치 않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대가성 괴롭힘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이 원치 않는 요구를 묵인하는 경우, 불법적 대가성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임대주가 지원자에게 자신과 섹스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
- 부동산 관리자가 세입자가 성행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거시키는 경우
- 세입자가 누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고 유지관리 담당자가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적대적 환경

적대적 환경 괴롭힘은 주택 공급자가 한 개인을 자금 조달을 포함하는 주택 또는 주택 관련 서비스의 판매, 임대, 가용성, 약관, 조건 또는 특혜에 지장을 주는 심각하고 만연한 원치 않는 성행위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 발생합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임대주가 세입자에게 심각하거나 만연하게 원치 않는 접촉, 키스,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 부동산 관리자가 세입자의 신체에 대해 심각하거나 만연하게 원치 않는 외설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
- 유지관리 담당자가 세입자에게 심각하고 만연한 수준의 원치 않는 성적 암시를 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초대 또는 허락 없이 아파트에 침입하는 행위

한 번의 사건이나 괴롭힘도 적대적 환경에 해당합니까?

예, 보호되는 특성으로 인한 일이며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적대적 환경에 대한 주장이 한 번의 사건에 대한 것이든 반복적으로 원치 않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든, 환경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잠재적 고려 사항 중에서도 원치 않는 행위의 유형(구두, 서면/물리적 행위 여부) 및 행위의 장소(예: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발생했는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는지)는 한 번의 괴롭힘이 주택을 사용하고 즐기거나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박탈할 정도로 충분히 심각했는지에 대한 평가 요인으로 포함됩니다.

성적 괴롭힘과 주택



Civil Rights
Department
STATE OF CALIFORNIA

안내 자료

괴롭힘을 항의할 때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적대적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 중 어떤 것도 입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의 증거는 적대적 환경이 발생했는지 결정하는 데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대적 환경이 있었다고 결정되는 경우, 피해 호소자의 배상액에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가 괴롭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임대주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임대주는 이를 최우선순위로 처리하고 보고 내용에 차별적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HUD는 주택 공급자가 정기적 직원 훈련, 차별 반대 정책 수립 및 홍보, 합리적인 사람이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는 경우 항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빠르게 조치하여 안전하고 안락하며 대응이 빠른 주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장려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정 주택법은 주택 공급자가 차별적 행위에 대해 인지하거나 인지했어야 하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는 경우 제삼자에 의한 차별적인 주택 관행을 시정하고 종료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차별적 괴롭힘의 요건을 구성하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 임대주는 사안을 조사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 기반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사실에 기반한 발견 내용을 기반으로 혐의가 제기된 가해자에 대해 위법 점유(퇴거) 절차를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주택 환경 내 성적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민권 부서(Civil Rights Department, CRD)에 항의를 제출하십시오.
2. 가해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이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하십시오.
3. 주택 공급자가 가해자가 아닌 경우, 주택 공급자에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4. 성적 괴롭힘은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되는 경우 CRD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처

민권 부서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수신자 부담: 800.884.1684

TTY: 800.700.2320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711)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장애가 있으신가요?
CRD에서 귀하의 불만 사항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지침의 추가 번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www.calcivilrights.ca.gov/posters/housing